



세계여성해방마크

세계여성해방 마크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여성을 상징하는 생물학적 기호, 그리고 평등함을 나타내는 두 개의 평행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평행선은 끊임없는 발전을 뜻하기도 한다.

스물아홉번째

아라여성

98 공존예감 총여학생회

스물아홉번째

아라여성

98 공존예감 총여학생회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

김 남 주

일상에 빠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며
억눌리는 자에게 헌신적이며
억누르는 자에게 용감하며
스스로에게 비판적이며
동지에 대한 비판도 망설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치열히
순간순간을 불꽃처럼 강렬히 여기며
날마다 진보하며
성실성에 있어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되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며
진실한 용기로 늘 뜨겁고
언제나 타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바꾸어 내며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잊어서는 안될 이름을 늘 기억하며
내 작은 힘이 타인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배려를 잊지 말고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와 함께 흐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

아라여성

글 실는 순서

- 여는 시 /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 · 김남주 2
- 여는 글 / 14대 총여학생회장 · 양오진숙 4

■ 공존예감 한 화기를 보내며

- 1. 상반기 평가서/6 2. 교육부 산하 여성연구소모임/13 3. 정산서/15

- 광고 ● 집행부 공개 모집 16
- ☞ 설문조사 - 성폭력 실태 및 의식 조사 17
- ☞ 도서관에 새로 들어 온 여성학 도서 32
- 광고 ● 회의실을 빌려 드립니다 37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 1. 여성연대회의란/38
- 2.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필요성/40
- 3.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에서의 원칙/43
- 4. 학칙 제정 사례 - 동아대학교/47

- ◆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위해 · 김오효선 50

☐ 글 모 음

- 1. 대학생들과 함께 해 온 여학위 · 한강방울 56
- 2. 새내기로서 여연소 활동을 하면서 · 박조지선 58
- 3. 내가 생각하는 여성학 · 최고진영 60
- 광고 ● 여성연구소모임 참여회원 모집 63
- ♣ 남남 편 64
- 광고 ● 여성문학상 공모 66



14대 총학생회장 양오진숙
(회계 96)

지난 겨울방학때 계획하기론 2달에 한번씩 '아라여성'을 발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반도 실행하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해 본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미성을 찾기에 앞서 "전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관성에 빠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본다. 아라여성이 나올 때쯤이면 9월초가 되겠지.

개강하고 지나온 6개월. 뒤를 돌아 볼 여유 없이 "사업에 몰혀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활발히 활동했던 건 아닌데.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다. 임기를 끝마쳤을 때, 학우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만들자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말해 줄게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가끔가다 학내 혹은 길거리를 거닐다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뜻밖에 인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면 공인 아닌 공인으로서 행동 하나 하나에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잘 해야겠구나"라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새내기 시절 감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금에 나의 모습에 대해 초반엔 마치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이젠 이런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지고 내 삶속에서 대학 3학년 시절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기존의 신문 형식으로 발간되던 아라여성을 새롭게 바꿔 보았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학우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 동안 잊고 살았던 캐치프레이어를 적으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해 본다.

의식! 행동! 시대의 변화!!!

절반의 힘으로 개척해 갈
14대 공존예감 총학생회



상반기 평가서

1. 일상사업

● 확대운영위

- 일시 : 3월 25일 오후 5시
- 장소 : 총여학생회 사무실

확대운영위원 총여 회장단 및 단대와 과 여학 주체로 구성된 의결기구로서 학기마다 한번씩 이루어진다. 회장단이 모든 단위를 돌아다니며 여학 주체를 만났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참여해 왔던 단위에서만 참가를 했다. 하반기 때에는 여학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야겠다.

● 출범식

- 일시 : 4월 2일
- 방법 : 교문앞 아침인사(아침 9시~10시)

운동 선전전(오후 3시~4시) - 총여 회장단 및 집행부 공연
살벌럼, 톤난소리 축하 공연
교사(늦은 6시~7시)

4·3 전날 행사를 치뤄내게 되어서 다소 엄숙해야 할 주간인데 들뜨게 치뤄내지 않았나 보고, 목요문화제가 끝나고 곧바로 선전전을 치뤄냄으로써 학우들에게 목요문화제의 한 행사로 잘못 비춰지기도 했다.



● 아라대동제

- 일시 : 5월 26일
- 방법 : ① 메이크업 강좌 및 페이스페인팅

여학우들에게 보편화 되어 있고 남학우들에게도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화장에 대해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법을 알려주고 좀 더 축제의 장으로 대동제를 만들어 보고자 페이스페인팅을 준비하였다.



㉔ 스크린 영화상영(G. I. 제인)

남자의 세계로 인식된 군대에서 한 여군이 강인한 여성으로서 이곳에서의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내용으로서 야외 스크린으로 상영했다.

㉕ 성폭력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p. 17~31 참조)

설문지의 분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우들이 성의껏 설문지에 응해주었다. 그리고 학내에서 크게 공론화되었던 성폭력 사건은 없었지만 알게모르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학우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유일하게 한명의 남학우가 작성한 설문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자 친구대신 해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수하여 광명 찾는게 어때요!

㉖ 태극마크 나눠주기

나라사랑에 대한 애국심을 심워 주기 위해서 설문에 응하는 학우를 대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 여성농민반(이하 여농반)

작년부터 농활기간동안 해 왔던 농촌탁아활동을 여농반으로 바꾸어 보았다. 하지만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농촌탁아활동과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지역에 위임해 버렸다. 앞으로 여농반을 함에 있어 모든 지역을 총여에서 담보해 낼 수는 없더라도 지역 여농반 주체와의 회의 체계를 가져 나감으로서 중심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 같다.

● 피임 관련 성교육 강연

• 일시 : 6월 10일

성의 개방화에 따른 낙태나 미혼모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마련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신관 3층을 콘돔화시켜 버렸으며, "성문란을 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받았다.



2. 조직사업

과와 중앙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단대여학위가 경·농대에만 존재하고, 영향력도 미흡함으로 인해, 모든 단위를 중앙에서 관리해야 했고 집행

부들의 힘만으론 부족한게 사실이다. 또한 학우들에게 있어서 학생회 사업에 대해 무관심한게 사실이고, 항상 봐 왔던 여학단위에서만 참여를 하게 되니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게 된다.

단위의 성격이 중앙과는 다르게 친목적으로 변화되어가도, 이를 해결할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였으며 "단위 여학 주체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해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내기 발걸을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내년도 학생회를 위해 단대 여학위 건설은 힘들더라도, 단대 학생회내 여학생부를 신설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3. 연대사업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 및 여성연대회의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대 방안으로 행해졌던 것은 없었고 단지 통신을 통한 사업계획서 혹은 타대학 실정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전여대협 총회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시기상의 문제로 불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연대회의와는 전여대협과 다른 연대 모임으로서 5월 14일에 있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에 참가하였다.

앞으로 긴밀한 연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여성연대회의에 관해서는 p. 38~39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역 타대학과의 연대

제주지역내 여학생운동 단위로서 제전 총여와 한전 여학생부가 있다.

정기적인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해 냈지만 제전 총여와의 수시적인 만남 정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모임에 대한 안정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 여민회

수시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듣는 정도다.

● 여성농민회

농활때 여성농민반을 운영하는 정도이다.

4. 학자사업

● 휴게실

여·휴를 이용하는 학우들을 위하여 정보 제공 측면에서 신문, 잡지 등을 비치하였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더 개선되어야 하겠고, 종합 휴게실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 나가야 할 것 같다.

3월달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휴게실 외부에 공중전화 2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LAN 설치와 함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위생대자판기 설치

5월 14일부터~5월 16일 동안 총 20대가 여자 화장실에 설치되었으며 건물별 위치는 다음과 같다.

건물 위치	건 물	위 치
인대 1층 동쪽, 2층 중앙	해 대	B동 1층, C동 1층
법대 1층 동쪽	자 대	1층, 4층 서쪽
경대 1층 서쪽	공 대	A동 2층, B동 1층, C동 1층
사대 A동 2층, B동 2층	학생회관	1층, 3층, 4층 동쪽
농대 A동 1층, B동 3층	교 양 동	1층, 2층 동쪽

● 여성학 도서 비치(p. 32~36 참조)

학교 도서관에 여성학 관련 도서가 열악하여 지난 7월 30일에 도서관측에 공문을 보내어 총 173권의 여성학 도서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현재, 구입이 가능한 146권의 도서가 권당 1~5권씩 도서관에 비치되었다. 앞으로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여학생회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업

●외화 및 동전 모으기

• 기간 : 1997년 12월 9일 ~ 12월 31일

• 결과 : JAP 5,780/USD 12.14/GBP 1.11/CNY 10.70/한국환 275,061원

총합 : 365,950원

KBS 제주방송국에 345,950원 기탁하였고, 장애자 복지단체(소쩍새 마을)에 20,000원 후원하였다. IMF 경제난으로 제주대학교 교직원 및 교수님 서랍 속에 묻혀 있는 외화 및 동전 모으기를 실시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집행부들의 사업을 떠맡게 되었고 학교 당국에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내부의 의견 대립 문제도 있었다.

●아침인사

한 달에 한번씩 아침인사를 하여 "자체내 행사를 알리자"라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출범식 전후로 하여 2번 밖에 하지 못하였다.

날씨가 행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원인이 있겠지만, 집행부의 의지 부족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강하고 나서 폭넓은 주제를 갖고 수시적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한다.

●회의실 마련

총여학생회 사무실 중 그 동안 생활방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올해 초 여학우를 중심으로 한 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호응도에 있어서는 좋았지만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동아리나 학생회 주변을 중심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졌다는 오류점이 발생했다. 8월 5일까지 총 74회 사용 빈도 중에서 동아리(41회), 학생회(27회), 과(6회)로 사용되어졌다.

●교육부 산하 여성연구소모임●

I. 여성관련자료실의 정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고, 거기에 따른 자료 정리에 힘을 쓰고 있다.

파일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정리하고 있다.

기지촌여성·성교육·여성과 노동·제주개발과 여성관광·정신대·남녀고용평등법·페미니즘·성과 관련된 사회인식과 통신·성의 상품화·남성학·교육·여성운동·미군·가타여성관련자료·종교·여학생운동론·여성과 매스미디어·여성해방운동·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

또 이에 따른 도서를 마련하여 파일과 함께 대여하고 있다.

II. 여성암에 관련된 문서배포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광고, 배포하였다.

여성만이 걸리는 특수암에 관련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산부인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작하였다.

III. 도내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한 조사

앞에 나온 여성암에 관련된 문서배포에 뒤 이은 것으로서 병원연락처와 진료비 등을 알람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 암진료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자료를 만들었고 동아리방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직접 배포를 함으로써 산부인과 진료의 중요성과 왜! 다른 외과병동보다 산부인과를 여학우들이 가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내도록 하였다.

IV. 설문조사 - 성의식에 관련하여

이 사업은 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6월에 발간하게 되는 여성수첩의 내용을 가늠하고 성의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수첩을 1학년 여학우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었기때문에 1학년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100부를 배포하였고, 여기에 대해 나온 내용을 토대로 수첩에 이 내용을 반영하였다.

V. 내부학습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습의 내용을 준비하였다. 1차 학습의 주제는 혼전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관한 얘기를 서로 나눴었고, 2차 학습의 주제는 성의 매매춘으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매춘을 비롯하여 점차 낮은연령대로 번지고 있는 성의 상품화의 문제, 그리고 위안대의 문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하였다.

VI. 홈페이지 작업

원래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현재 학내에서도 인터넷망이 잘 만들어져 있고 학우들의 이용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홈페이지에 담은 여연소의 모습이 하나의 홍보효과도 있겠고, 여기에 담은 내용이 자체 정비도 될 것이라는 취지하에 실행해 나가고 있다.

VII. 소식지 발간

이름짓기를 여성수첩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은 여연소의 1학기 내의 사업을 알리고 여학우들이 알아야 할 성지식을 비롯하여 성폭력·성희롱에 관련한 지식과 법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주제로 담았다.

VIII. 비디오 상영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는 성폭행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소식지 발간의 내용과 주제를 맞춘다는 의미로 영화 '피고인'을 선정하여 상영하였다.

장소는 학생회관내 시청각실이었는데 시설의 미비점에 관련한 문제를 댄다면 자체적으로도 평가가 좋았던 사업이다.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고 내부의 단합도 보여주었던 사업이다. 다만 영화가 너무 많은 문제를 시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해부족이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정산서

(단위 : 원)

	월	내 용	금 액
수 입	2월	학생회비 가예산	800,000
	4월	학생회비	855,000
	5월	대동제 보상금	1,622,900
	6월	여성학 강좌 보상금	260,000
		총수입	3,537,900
지 출	1월	운영비	24,000
	2월	운영비	5,000
		사무용품비	15,000
	3월	확대운영위	42,000
		4·3 토론	4,200
		운영비	166,227
		소모품	16,840
		사무용품비	63,020
	4월	출범식	217,700
		4·3 후원금	30,000
		여학위 지원금(경·농대)	100,000
		여연소 지원금	250,000
		시스템 분담금	50,000
		운영비	5,000
		소모품	900
	5월	회장 활동비(공청회)	120,000
		대동제	1,622,900
		의대 분담금	50,000
		소모품	1,920
	6월	여성학 강좌	260,000
		재총협 분담금	132,400
		대동제 외상비	60,000
		전여대협 회비	151,900
		운영비	200,190
		총지출	3,589,197

낮설은 단어가 보이죠? = 보상금.

보상금이란 학교측에서 중앙자치기구에 지원해 주는 돈으로서 총 5,450만원 중에서 총학 2,840만원, 동연 940만원, 대의원 850만원, 총여 8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비는 총 수거액에서 4.6% 할당된 금액입니다.

집행부 • 공개 • 모집

“여자를 벗고 나를 찾으세요”

이제, 잃어버린 그대를 찾으십시오.

여기 「총여」에서

- 대 상 : 97, 98학번 여학우
- 어디서 :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
- 전 화 : 754-2364



창문을 봐 주세요. “회”자가 안보이죠.
총여 ‘회의실’로 오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성폭력 실태 및 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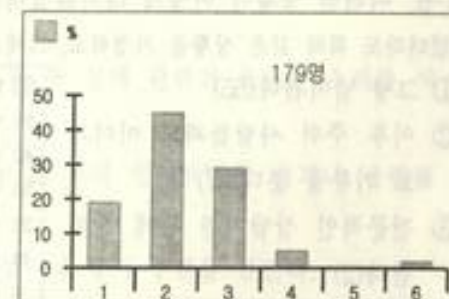
I. 성폭력의 유형, 사례 조사

1. 여성에 대한 언어적 유형

-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
예 : “여자가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나?”, “여자가 많으면 일이 안 된다.”
-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예 : “엉덩이가 커서 애 잘 낳겠다”, “얼굴값 한다.”, “너 술집 나가니?”
- 여성다움에 대한 강요.
예 : “여자는 순종의 미덕이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지.”
“여자가 너무 나선다.”
- 여성들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하는 음담패설 및 음란가요 등

1-1. 위와 같은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 ① 매우 그렇다(34)
- ② 대체로 그렇다(80)
- ③ 약간 그렇다(52)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9)
- ⑤ 그렇지 않다(1)
- ⑥ 매우 그렇지 않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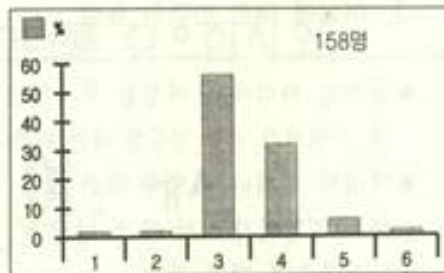


1-2. 위와 같은 발언을 학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에게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자신에게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150 명 84%) ② 없다(28 명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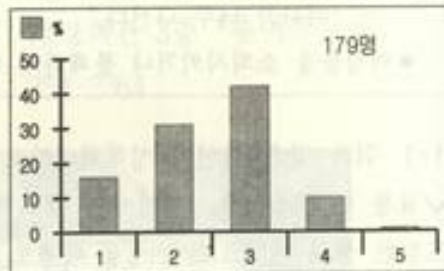
1-3. 만약 위와 같은 발언들을 들었거나 전해 들었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교수(3)
② 교직원(4)
③ 친한 동기, 선후배(88)
④ 안면 있는 동기, 선후배(50)
⑤ 모르는 사람(10)
⑥ 타학교 구성원(3)



1-4.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혹은 전해 듣는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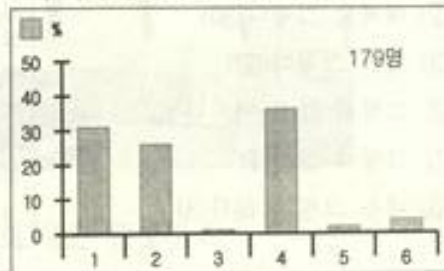
- ① 없다(28)
② 이제까지 한두번 정도(55)
③ 가끔씩(한 달에 한두번 정도)(76)
④ 자주(일주일에 여러번)(18)
⑤ 매일(2)



1-5.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냥 넘어간다(55)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풀다(47)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2)
④ 발언 당사자에게 잘못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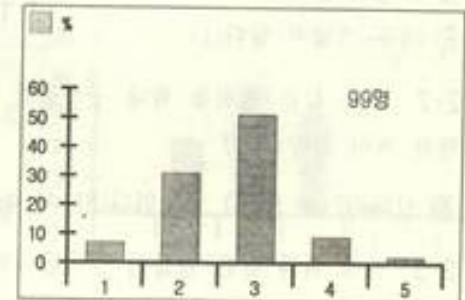
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한다(65)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3)
⑥ 기타(7)

1-6. (1-5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위의 행동들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7)
②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31)
③ 불쾌하지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기 때문이다(50)
④ 대응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없거나 모르기 때문이다(9)
⑤ 기타(2) 그때 분위기나 내 기분 등에 따라 대처하는게 틀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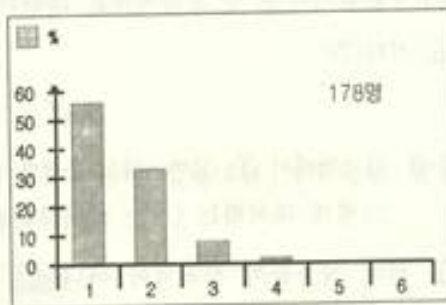


2.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유형 - ① 개인의 행동

- 여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결눈질한다.
-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 여성 앞에서 음란물(누드사진, 포르노 만화, 비디오, 포스터 등)을 보거나 돌려보거나 부착한다.
-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 앞에서 낸다.
- 통신망(PC통신, 삐삐, 전화 등)을 통해 성적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
- 여성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성기나 성기 주변을 만진다.

2-1.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 ① 매우 그렇다(100)
- ② 대체로 그렇다(58)
- ③ 약간 그렇다(15)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3)
- ⑤ 그렇지 않다(1)
- ⑥ 매우 그렇지 않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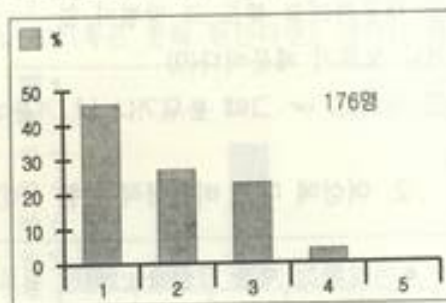


2-2. 위와 같은 행위를 학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97 ⇨ 54%)
- ② 없다(81 ⇨ 46%)

2-3.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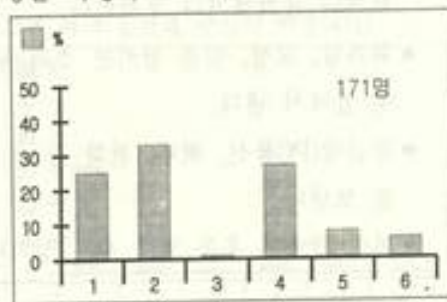
- ① 없다(81)
- ② 이제까지 한두번 정도(48)
- ③ 가끔씩(한 달에 한두번)(40)
- ④ 자주(일주일에 여러번)(7)
- ⑤ 매일(0)



2-4.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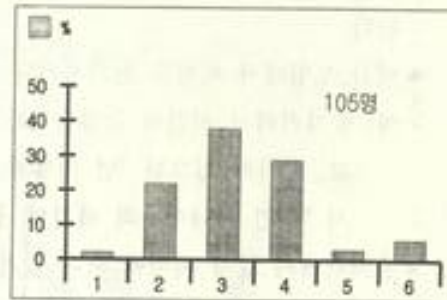
- ① 그냥 넘어간다(43)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
로 기분을 푼다(56)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
한다(1)



- ④ 행위 당사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46)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14)
- ⑥ 기타(11) ⇨ 남자 친구에게 알려 배친다.

2-5. (2-4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위의 행동들이 성폭력이 아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
- ②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신
경 쓰지 않는 것이 편하기 때
문이다(23)
- ③ 불쾌하지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기 때문이다(40)
- ④ 대응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이다(31)
- ⑤ 이해가 가기 때문이다(3)
- ⑥ 기타(6) ⇨ 하기도 귀찮고 또 지적받겠다는 생각.



2-6. 이 외 본인이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성폭력이라고 여겨지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 발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술자리에서 꼭 여학우가 술을 따라야 술맛이 난다는 등의 발언들. 그냥
친한 척 어깨에 손을 얹거나 엉덩이를 살짝 만질 때
2. 실험실 후배 여학우인데 교수님처럼 회식 갔다가 안주 다 먹여주고, 옆
에서 교수님이 후배 허벅지에 손 올려 놓았다.
3. 장난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가슴이 적다는 등의 신
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다.
4.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만지고 있었다.

2.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유형 - ② 단체의 행동

- 단체, 모임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학업이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잡일을 시킨다.

예) 모꼬지에서 여자만 부엌일을 시킨다, 차 심부름

- 새터, 동문회 등의 단체 모임에서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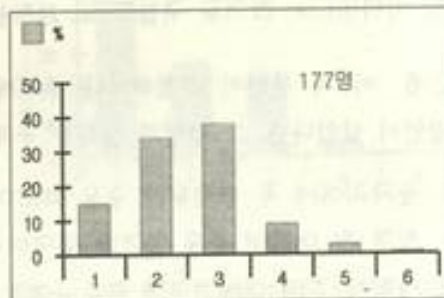
- 여러 모임에서 여성을 소외시킨다.

예) 술자리에서 시간이 늦었을 때, 여성이 가면 "분위기 켜다"고 하고, 끝가지 있으면 "넌 어떻게 된 여자애가?"라고 한다. 대화에서 "이전 사나이들의 얘기야. 좀 빠져!" 한다.

- 술자리에서 남자 사이에 끼어 앉거나 술시중을 들게 한다.

2-7.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 해 주십시오.

- ① 매우 그렇다(26)
- ② 대체로 그렇다(60)
- ③ 약간 그렇다(67)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17)
- ⑤ 그렇지 않다(5)
- ⑥ 매우 그렇지 않다(2)



2-8. 위와 같은 행위를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126 ⇨ 71%)
- ② 없다(52 ⇨ 29%)

2-9.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 ① 없다(52)
- ② 이제까지 한두번 정도(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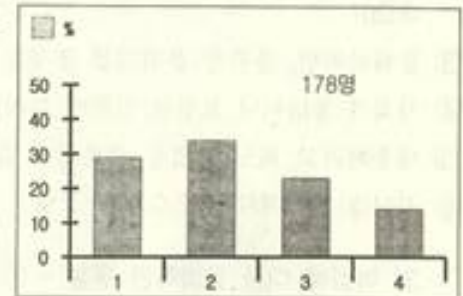
- ③ 행사 두세번에 한두번 정도(41)

- ④ 술자리나 새터, 모꼬지 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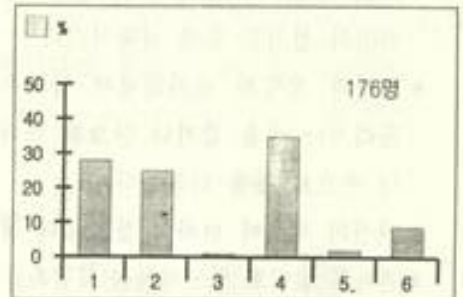
2-10.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냥 넘어간다(50)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풀다(43)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1)
- ④ 행위 당사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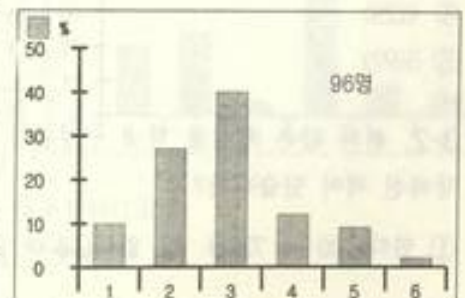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4)
- ⑥ 기타(16) ⇨ 1. 뒷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가고, 동기 어하는 지적하고 넘어간다.
2. 장난하듯 따진다.



2-11. (2-10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위의 행동들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0)
- ②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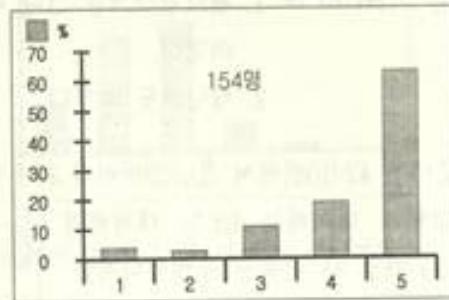
- ③ 불쾌하지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기 때문이다(38)
- ④ 사회적 통념이나 모임의 전통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11)
- ⑤ 대응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이다(9)
- ⑥ 기타(2) ⇨ 여자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

3.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 - ① 성희롱

-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쪽으로 기대오거나 손을 댄다. 또는 자신의 성기를 몸에 접촉시킨다.
- 단체와 모임의 술자리에서 남학우가 불쾌할 정도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한다. 혹은 술취한 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한다.
-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한다. 또는 신체접촉을 요구한다.

3-1. 위와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로 '심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한 성폭력이다'를 5, '약간 성폭력적이다'를 1로 계산해서 1부터 5까지 수치를 표기해 주십시오.

- ① 1(7)
- ② 2(4)
- ③ 3(17)
- ④ 4(29)
- ⑤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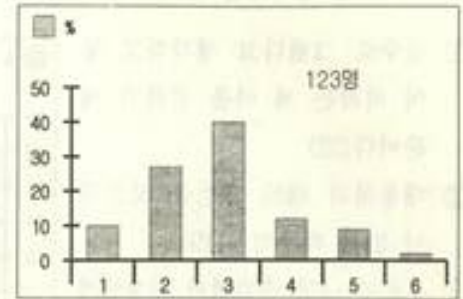


3-2. 위와 같은 행위를 학내 구성원들 또는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130 ⇨ 73%) ② 없다(48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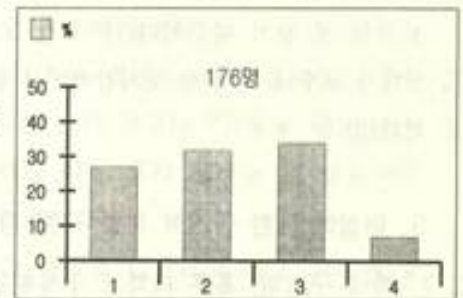
3-3.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교수(2)
- ② 교직원(1)
- ③ 친한 동기, 선후배(57)
- ④ 안면 있는 동기, 선후배(48)
- ⑤ 모르는 사람(14)
- ⑥ 타학교 구성원(1)



3-4.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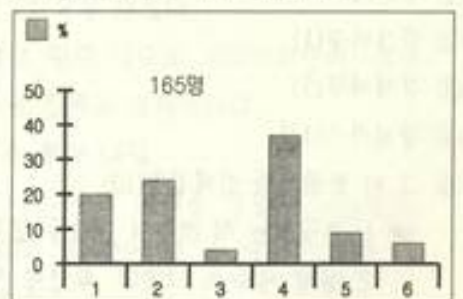
- ① 없다(48)
- ② 이제까지 한두번 정도(57)
- ③ 가끔씩 (한 달에 한두번 정도)(59)
- ④ 자주 (일주일에 여러번)(12)



3-5.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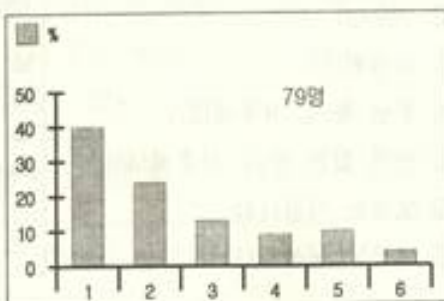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냥 넘어간다(34)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푼다(39)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6)
- ④ 가해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61)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15)
- ⑥ 기타(10) ⇨ 다음부터는 상대 안하려고



3-6. (3-5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수로 그랬다고 생각하고 물어 버리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32)
- ② 대응하려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이다(19)
- ③ 소문이 나면 주위에서 이상하게 바라볼 것 같기 때문이다(10)
- ④ 반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더 심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보복할 것 같기 때문이다(7)
- ⑤ 상대가 교수나 선배 등 윗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8)
- ⑥ 기타(3)



3. 여성에 대한 물리적 유형 - ② 강간, 강간미수

3-7. 학내 구성원,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강간(4)
- ② 강간미수(1)
- ③ 강제애무(7)
- ④ 강제키스(11)
- ⑤ 그 외 불필요한 신체접촉(10)

- ☞ 1. 부딪히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진다.
- 2. 몸을 옆으로 내민다. 무언결 정도로 얼굴을 빙혀 쳐다본다.
- 3.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한다.

3-8. 위의 경우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 ① 교수(0)
- ② 교직원(0)
- ③ 친한 동기, 선후배(15)
- ④ 안면 있는 동기, 선후배(8)
- ⑤ 모르는 사람(6)
- ⑥ 타학교 구성원(3)

3-9.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본인이 경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M·T가서 주위 분위기가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다.
2.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남학우들에게 느끼는 것은 touch가 심하다는 것이다. 온군수씩 몸을 기대오거나 부딪히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자주 얘기한다. 이럴 때는 혼자 당하는 게 보통이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무시하는 게 보통이다.
3. 농촌활동 갔다가 남자가 나를 으스스한 곳으로 나오라고 했다. 처음엔 물렸는데 나중에 후! 후!
4. 아무 것도 모른 채 나쁜 것인지도 모르게 하였다.
5. 지하 상가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 내 몸을 만졌다.
6.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아인데 전화나 편지 상으로 기다리라면서, 집에 찾아간다고 연락이 온다. 정난이 아닌 진짜로 경제적이다.
7. 술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대고, 등으로 끌어 내림.
8. 저녁에 공중전화 쓰고 있는데, 뒤에서 가슴과 아래를 건들고 도망갔다. 너무 빨리 도망가서 어쩔 수가 없었다. 또 전에 몇 번 만난 선배가 도둑 키스했다. 기분 나쁘고 사과 받아냈다.
9. 술 취한 척해서 노골적으로 몸을 거든다.
10.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는 핑계로 신체 접촉을 하려해서 "왜 그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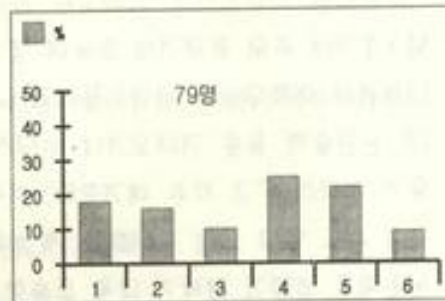
라고 크게 외쳤다.

11. 친한 친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괜히 그 친구도 장난인데, 나 혼자 그러면 무언할 것 같아서...
12.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와 스치는 사이에 그 남자가 나의 어깨부분을 스치면서 만질 것 같았다. 대개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쫓아보았는데 소리를 질러 화내고 싶었지만, 사람들도 있고 괜스레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다.

3-10.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냥 넘어간다(14)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풀다(13)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8)
- ④ 가해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20)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17)
- ⑥ 기타(7) = 묻고 놓여진다.



3-11. (3-10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수로 그랬다고 생각하고 물어버리는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8)
- ② 대응하려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이다(12)
- ③ 소문이 나면 주위에서 이상하게 바라볼 것 같기 때문이다(7)
- ④ 반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더 심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보복할 것 같기 때문이다(3)

- ⑤ 상대가 교수나 선배 등 윗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3)
- ⑥ 기타(4) = 의도가 나쁘다면 모를까, 꼭 그렇지만 않다는 생각에 말할 필요 없었다.

II. 성의식 조사

4-1. 다음의 명제들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표 해 주십시오.

- 질문내용
- ① 성폭력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고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 ②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나는 대학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대학에서 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6(4%)	16(9%)	87(52%)	58(35%)
②	2(1%)	2(1%)	29(18%)	134(80%)
③	2(1%)	49(29%)	96(58%)	20(12%)
④	17(10%)	22(13%)	49(30%)	79(47%)

III. 성폭력 학칙 제정에 관하여

5-1. 위에 예시를 든 상황들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학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157 = 92%) ② 아니오(13 = 8%)

5-2. (5-1번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학칙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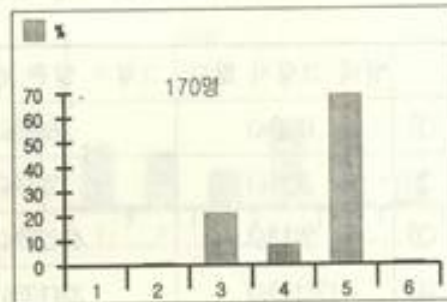
- ① 성폭력 문제는 학교 차원을 떠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해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 ②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해서 처리한다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이다(2)
- ③ 사소한 일까지 성폭력 학칙에 적용되면 평소 생활이 매우 혼란스럽고 번거로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
- ④ 학칙이 제정되면 학칙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성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
- ⑤ 학칙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상황에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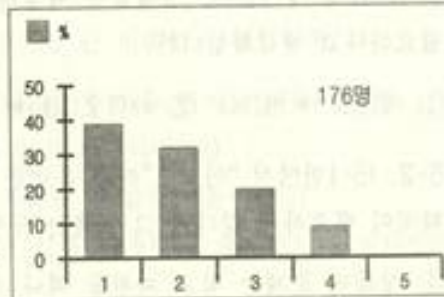
5-3.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진다면, 누구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수(0)
- ② 교직원(1)
- ③ 학생(36)
- ④ 성폭력 관련 학외 전문가(13)
- ⑤ 교수와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가 똑같은 권한으로(118)
- ⑥ 기타(2)



5-4.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성폭력까지 징계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언어, 비언어, 물리적인 성폭력 모두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68)
- ② 비언어, 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대상으로 하면 된다(56)
- ③ 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 대상으로 하면 된다(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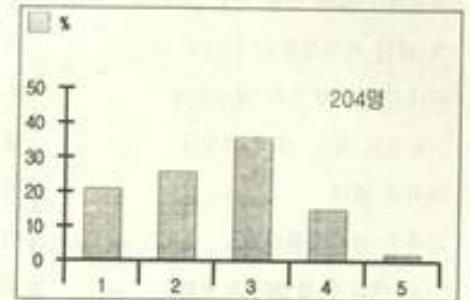


④ 강간, 강간미수 수위의 성폭력만 징계해야 한다(16)

- ⑤ 기타(1) → 징계까지가 아니더라도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폭력은 결코 비언어와 물리적인 데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고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5-5.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진다면, 징계 유형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적, 휴학 등 학업을 제한하는 방법(43)
- ② 일정기간 여성 단체에 봉사하는 등의 봉사행위(52)
- ③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74)
- ④ 일정기간 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31)
- ⑤ 기타(4) → 1. 곤장 30대 명석말어
2.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로 구속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여성학 도서

도 서 명	저 자	출 판 사	권수
결혼한 여자의 아름다운 반란	강 회 옥	아세아 미디어	3
가족철학: 남성철학과 여성경험의 만남	강 선 미 와	이 대 출 판 사	3
결혼하고 싶은 이유 하고 싶지 않은 이유	필 백	작 가 정 신	3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편 집 부	가 지 않 은 길	3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조 은 외	서울대출판부	3
그림으로 보는 성의 여성사	해 리 엣 질 버트	까 치	3
과학과 젠더	이블린 폭스 켈러	동 문 선	3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미 셸 바 랫 외	여 성 사	3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그 린 비	3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경 문 사	3
남성 여성 평등한 노동	제 클 린 굿 나우	한 울	3
나의 몸, 나의 길	린다 레드 레이	이 대 출 판 사	3
나는 내 그림 속에 있었다	로 다 자 미 창	해	3
남과 여에 관한 우울하고 슬픈 결론	잉 예 슈 테 판	새로운 사람들	3
날마다 이혼 당하는 여자	김 수 련	장 원	3
남자의 가정	정 인 태	플 빛	3
동성애의 심리학	윤 가 현	학 지 사	3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아드리엔느 리치	평 민 사	3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노 라 칼 린	책 갈 피	3
다른 남자를 꿈꾸는 여자	에 바 헬 러	얼 린 책 들	3
대지의 딸	아그네스 스메들리	한 울	3
로자 룩셈부르크	헬 무트 허르슈	한 길 사	3
베두사의 웃음: 한국 페미니즘 영화와 섹슈얼리티	이 수 연	커뮤니케이션북스	3

도 서 명	저 자	출 판 사	권수
매스미디어와 여성	김 선 남	범 우 사	1
모계사회의 남성과 여성	김 미 역	민 속 원	3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해리엇 골드허 러너	이 대 출 판 사	3
문학과 페미니즘	렘 모 리 스	문 예 출 판 사	3
매맞는 여자들	델 마 틴	한 국 문 연	3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수셴 예스트리치	교 육 과 학 사	3
부처님과 여성들	곽 철	밀 알	3
버지니아 울프	베르너 발트만	한 길 사	3
불멸의 여인들	이 병 철	김 영 사	3
부엌신의 아내	에 이 미 탄	대 흥	3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여성들	정 석 기	꿈 란	2
성역할과 여성	임 정 빈 외	학 지 사	3
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	출 판 부	우 리 교 육	3
살 맛나는 세상 여자가 만든다	손 풍 삼	고려원 미디어	3
섹슈얼리티:성의 정치학	제 프 리 위 스	현실문화연구	3
3기니	버지니아 울프	여 성 사	3
선택	이 문 열	민 음 사	3
쉬르 섹슈얼리티	휘트니 차드워	동 문 선	3
사회학자들이 본 여성과 남성	박 미 혜	한 울	3
웹터이야기	한국여성의전화	그 린 비	3
슬픈 누드 화려한 거짓말	이 재 기 옮 김	두 영	3
성과 현대사회	우리사회연구회	과 란 나 라	1
성의 변증법	S. 화 이 어 스 톤	플 빛	3
성평등의 사회학	이 영 자 외	한울아카데미	3
성숙애와 금기의 문화	이 종 철 외	대 원 사	3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캐 물 길 리 건	철학과 현실사	3
섹스북	퀸 터 아 덴 트	박형출판사	3
성교육	구 성 예	석 탐	3

도	서	명	저	자	출	판	사	권	수
신에게는 팔이 없다	안드레아 드워킨	고	려	원	3				
스무 살이 되기 전의 날들	김 향 숙	문	학	과	지	성	사	3	
여기 어때?(여성용)	김 수 연	천	마	3					
여성 그 다름과 힘	김 흥 희	삼	신	각	3				
여성과 아로마테라피	김 욱 권	아	트	소	스	1			
여성의 눈으로 읽는 문화	송 명 희	외	새	미	3				
여성의 신비	베 티 프 리 단	평	민	사	3				
여성의 홀로 서기	미 나 또 아 끼 코	엘	맨	2					
여성의학사전	마쓰야마 에이키치	엘	린	사	회	3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	사 라 켄 트	살	신	각	3				
여성이 꼭 알아야 할 남성심리 26가지	니 나 웨 어 웰	글	벳	사	3				
여성이 꼭 알아야 할 성에 관한 모든 것	보스틴 우먼즈 헬즈 북 컬렉티브	태	일	3					
여성이 된 기쁨	잉글릴 트로비쉬	생	명	의	말	씀	사	3	
여성이 여성에게	유지나아 프라이스	생	명	의	말	씀	사	3	
여성학의 이해	한국여성학연구회	경	문	사	3				
여성학의 실재와 적용	박 충 신 외	대	구	대	3				
여성해방의 정치학	린 지 저 먼	여	성	사	3				
열린 세대 자신 있는 여성	로즈마리아고니토	평	민	사	3				
영원히 기념할 여성	이 연 욱	꿈	관	출	판	사	3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장 미 경	문	원	3					
완전한 여성이란	마 라 벨 물 간	배	제	서	판	3			
왜 여성학인가	남 인 숙	학	문	사	3				
우리소설속의 여성들	조 동 길	새	미	3					
여자들의 꿈	루 시 구 디 슌	또	하	나	의	문	화	3	
여성의 역사 4(상/하)	조르주 뒤비 외	새	물	결	각	3			

도	서	명	저	자	출	판	사	권	수
여성 노동의 역사	셀 라 레 켄 학	이	대	출	판	사	3		
여성 상위 시대	에 설 리 몬 테 구	한	국	학	습	개	발	원	3
여성 망명 정부에 대한 공상	글로리아 스타이닝	현	실	문	화	연	구	3	
여성 해방의 역사	앙 드 레 미 셸	백	의	3					
일곱 가지 남성 콤플렉스	여성을 위한 모임	현	암	사	3				
여성해방 문학의 논리	한국여성연구회	창	작	과	비	평	사	3	
인간의 시작(1/2)	존 D. 램 버 트	아	름	드	리	각	3		
어머니의 신화	새 리 열 서 리	까	치	3					
여자는 안되고 남자는 되고	노 라 S. 킨 저	엘	맨	3					
여자도 이제는	박 은 희	새	날	3					
여자의 허물벗기	이 나 미	문	학	사	상	가	3		
왜 이혼 못하는가	장 정 순	현	민	3					
이혼 또 하나의 선택	출판집단사잇소리	여	성	사	3				
어머니들	도 미 털 라	한	마	당	3				
여성을 위한 의학책	미쓰미네히사미	심	지	1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김 혜 순	문	학	과	지	성	사	3	
위기의 여자 아름다운 영상	시몬느 드 보봐르	오	상	3					
어머니와 딸들	아 들 렌 느 샤 살	사	계	절	3				
여자는 어떻게 죽어 가는가(1/2)	한 지 연 외	가	나	각	1				
여자의 적	임 욱 우	석	3						
여자는 슬프다	유 순 하	민	음	사	3				
여자들(상/하)	필 립 솔 레 로즈	한	길	사	각	3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살	공 선 욱	삼	신	각	3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엘 리 자 세 스키	한	마	당	3				
지혜로운 삶을 위한 자기관리	제 이 스 래 어	삼	성	서	적	3			
재생산의 비밀	레오폴디나 포르투나미	박	종	철	출	판	사	3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정 대 협	한	울	3					
출 여성 그리고 남성	크리스티 아테어	이	대	출	판	사	3		

도 서 명	저 자	출 판 사	권수
착한 여자 콤플렉스	윌리엄 페즐리	문학사상가	3
캠퍼스의 성희롱	기 회 실	동 인	3
페미니즘 미술사	란 다 노 클 런	예 경	3
페미니즘 문학론	최 동 현 외	한 국 문 학 사	1
페미니즘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수잔 엘리스 왓킨스	이 두	3
포스트 구조주의와 페미니즘 비평	크 리 스 위 든	한 신 문 화 사	3
페미니즘 이론사전	메 길 힘	삼 신 각	3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엘리자베스 라이트	한 신 문 화 사	3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이 장 순 외	한 울	3
포르노그래피	안드레아 드워킨	동 문 천	3
포르노에 도전한다.	캐서린 A. 맥키년	개 마 고 원	3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구 마 피 터 손	시 각 과 언 어	3
페미니스트	리 처 드 에 번 스	창 작 과 비 평 사	3
하버드의 여성들	리즈 로먼 켈리즈	명 문 달	3
한국 문학과 여성	황 제 군 외	박 이 정	3
한국 문학과 여성주의 비평	정 순 진	국 학 자 료 원	3
한국 여성 문학 비평론	안 숙 원 외	개 문 사	3
한국 여성 문학 연구	허 미 자	태 학 사	3
한국 여성 소설 연구	김 형 자	민 지 사	3
한국 여성 시인 연구	정 영 자	평 민 사	3
한국 여성 시학	김 현 자 외	길 온 샘	3
한국 여성의 경험	한국 여성 신 학 회	대한기독교서회	1
한국 역사 속의 여성 인물(상)	편 집 부	한국여성개발원	3
현대여성해방사상	헤스터 아이젠슈타인	이 대 출 판 사	3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메 리 대 일 리	이 대 출 판 사	3
한국의 매춘	박 종 선	인 간 사 랑	2
함께 배우는 성	미리엄 스토퍼드	다 섯 수 례	3
현대인의 결혼과 가정	김 영 일	학 문 사	3
한국 여성사 자료집 (4)	편 집 부	이 대 출 판 사	1
한국 여성사 자료집 (1, 8, 9, 10)	편 집 부	이 대 출 판 사	각4
한국 여성사 자료집 (2, 3, 5, 6, 7)	편 집 부	이 대 출 판 사	각5

회의실을 • 빌려 • 드립니다.

- ⊗ 공강 시간때 쉼(잠잘 수도 있음) 장소가 필요하신 학우
- ⊗ 마땅히 회의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고민하시는 학우

그 외 누구든지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곧 총여학생회로 찾아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 754-2364)

페대 학우 여러분들의 모든 '다원대상'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공존여강총여가
토고대할 배려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을 빌려드립니다!!!

요금: 무료!!!

대상: 페대대이라면 누구나. 여학우우대.

사용가능일: 월~토 2시 이상

*사용가능지역: 토로.회의 교직원 공학인 대강.

대학악당, 제2도 1학년 제2학년 선형미 적형

기타: 소독업은 학우, 동아리 없는 학우도 환영.

회의실이 꼭 필요한 여러분들 위한

공간입니다.

내머리 자세한 사항은 54-2364로

문의 바랍니다.

공존.여강.총여학생회

여성연대회의란

지난 96년 연대 사건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항하여, 97년 3월 31일 9개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연대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서명 운동, 문화제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 후 '공대위' 모임에서 각 학교 여학생 단위들은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어려움과 한계라는 현실상의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비밀비재한 학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응은 그 동안 일회적이고,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성폭력 사건이 사적인 일이나 일회적인 일로 치부되는 상황 속에서,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여부가 그 종결인양 되어 버리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매년 비슷한 사건에 매달려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단기적인 대응으로 끝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의 고민과 대책을 모색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 성의식과 성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보할 상시적인 기구와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여성연대회의는 이러한 동기에서 결성되었다.

97년 4월 다른 학교들에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가 여성연대회의는 구성되었다. 당시 국민대, 성균관대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성연대회의는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동의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97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학칙의 의미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을 절감하

고, 성폭력 학칙 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학칙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작업과 학칙 가안을 계속하여 수정,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현재 여성연대회의는 학칙 가안의 검토를 위해 여성학적, 법률적 자문을 구한 상태이며, 통신 공간 내에 성폭력 학칙제정에 관한 토론 방을 개설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연세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여성특별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여대 날개달기, 홍익대 여학생회,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한국외국어대 왕산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영남대 총여학생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수원대 총여학생회, 인천대 총여학생회, 아주대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서강대 성정치위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필요성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대학 사회에서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항상 그러한 문제제기들은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공동체 내의 성문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탄핵(?) 정도의 해결을 보면서 대학 사회 내에서 잠시 이슈화되었다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아주 빈번한 사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가는 것을 반대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 일상화된 성폭력에 의한 당위가 아닌 절실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우리의 권리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주장한다.

현재 대학 사회 내에서 학칙은 접근하기 어렵고 공동체의 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풍긴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폭력 학칙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을 때 학칙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학우들도 있다. 이러한 학칙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폭력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써 '학칙'이라는 기제를 과감히 선택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화석화되고 고정된 규제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학칙'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현재의 학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한 유연한 학칙, 제정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학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학칙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것이다. 즉, 학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

것을 위반했을 시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칙이 아닌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 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가 됨을 알림으로서,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만이 아닌 그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학칙이므로 우리가 사고하는 학칙은 현재의 학칙이 가지는 이미지보다는 자치규약으로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하지만 우리는 자치규약이 아닌 명백히 '학칙'이라는 틀을 성폭력 방지의 수단으로 사고하고 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이라는 사건은 대학 사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설문을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해 보면, 물론 학생에 의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직원과 교수에 의한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사회 내에서 완전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 뿐 아니라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성폭력의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반하기에는 자치규약이라는 것은 학생들만의 그것이 될 수 있기에 그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칙'이라는 틀 거리를 택함으로써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하에 공동체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뿐 아니라 학습권도 보장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성폭력이 대학 사회에서 발생하면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다시 말하면 대학 사회 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 속에서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그 공동체 내에 적응하지 못하며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거나 떠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던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학 공동체 그 자체였다. 대학 사회의 구성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교육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은 대학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학당국은 성폭력 사건 속에서 전혀 학내 구성원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학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기제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필요한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대학 사회의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목적은 '처벌' 뿐 아니라 대학 사회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학칙을 통하여 우리는 대학 사회 내의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순간순간의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통해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칙'이라는 확실한 기제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사회가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보면 많은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 사회의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우리는 인정하며,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형성된 성문화 역시 사회적으로 유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 사회는 구성원이 끊임없이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바탕으로 우리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에서의 원칙

성폭력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의 가해자 역시 사회적인 피해자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해자의 죄가 사해될 수는 없다. 그는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의 체현자로서의 죄가가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듯 가해자이며 동시에 사회적 피해자인 사람을 생산하는 모순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범죄이므로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가해자의 죄과는 관대하게 다루어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죄과가 돌아가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 내의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에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성폭력 범죄의 딜레마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학칙의 단순한 처벌체계 이상의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원칙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성폭력의 개념에서의 원칙

성폭력은 성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다.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문제시되는 것이 그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혹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니는 지의 판정이다. 흔히들 성폭력을 행동의 수위로 파악하면서 일정 수위 이상의 것은 성폭력이라

칭하지만 그 이하의 것들은 성추행으로 구별하여 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정도에 따른 구별을 우리는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의미 그 자체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것에 수위라는 것을 따질 수는 없다. 단지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어떠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 이후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의 경중은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애매한 단어가 나타나게 된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앞에서 성폭력을 성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라고 정의하며 그 정의를 학칙에까지 적용해야 한다.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성성에 의한 피해가 너무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고 성성에 기반한 모든 성차별이라 불리우는 행위까지를 성폭력의 범주에 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상당히 특수한 범죄이기에 상황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온전히 그 사건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경험은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의 피해자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파악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을 새롭게 정의 내리는 일은 공동체 내의 성문화를 바르게 바꿔 나가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제정과 적용에서의 원칙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견지해야 한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수한 개인이 모였다고 하여도 그 사회의 문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일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폭력이라는 범죄이다. 보통 대학이라면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우며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

되어 진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사회 내에서도 비밀비재하게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을 저지른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그 범죄가 발생한 대학 공동체의 성문화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이 지니는 사회성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성폭력 학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적용함에 있어서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단순한 보복의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처벌은 단순히 그 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서 학칙 내에서 충분히 공동체 내의 구성원에 대한 사과를 담아 내며 그리고 공동체의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학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달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성을 살펴보았다. 그 논리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역시 공동체의 성문화가 만들어낸 피해자이다. 그렇다고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행한 가해자이다. 물론 공동체 내의 성문화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는 그러한 성문화 속에서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범죄의 체현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가해자가 행한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침해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최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워져야 한다. 물론 가해자의 처벌 자체는 성폭력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만 그곳에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수위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특별위원회의 처벌결정에 대하여 거부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학칙은 모든 공동체 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성폭력 학칙은 대학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학생 뿐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공동체의 3주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통로를 열어 놓아야 한다. 성폭력 학칙이라는 것이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성문화를 바꾸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학칙이라는 것을 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자신과 주위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공동체 성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폭력 학칙이 단순히 하나 혹은 둘만의 주체가 중심이 되어 똑딱똑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성원의 동의하에 제정되고 적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성폭력 학칙은 유연하여야 한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학칙은 현재 대학 사회에서 인식되는 그러한 획석화되어 있는 학칙은 아니다. 즉, 하나의 조항으로 굳어져 사건의 내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징계를 내리는 학칙은 우리가 원하는 학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학칙은 운영에 있어서 각 사안에 따른 유연성이 보장되는 학칙이다. 성폭력 사건은 여타 다른 문제와 달리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비슷한 행위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학칙 그 자체가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매우 유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학칙은 개정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성폭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온전히 피해자 중심적이고 바람직하다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유연성을 성폭력 학칙은 지녀야 한다.

학원내 성폭력에 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는 것
2.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3.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것
4.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5.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6. 몸이나 손으로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7.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하는 것
8.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9.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나 특전을 빌미로 강제 추행하는 것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시간강사, 축탁직을 포함한다)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4조(피해자 보호)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

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징 계

제 5조(교원의 징계) 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6조(직원의 징계) 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동야학숙 직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7조(학생의 징계) 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한다.

제 8조(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제 5조 내지 제 7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 9조(징계결과의 공고) 학교는 제 5조 내지 제 7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폭력 상담실

제10조(상담실 설치)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해당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상담실의 의무) 상담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일
4.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12조(운영위원회 등)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 3명, 학생 3명, 상담실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실장이 그 의장이 된다.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을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위해

- 가정폭력 방지법의 내용과 과제 -

김오 호 선

(제주여민회부설여성상담소 상담실장)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

가정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았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가부장제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사적인 영역의 문제였다. 특히 아내구타인 경우는 '때리는 남편'과 '매맞는 아내'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그 누구도 여기에 간섭할 수 없었다.

매맞는 아내들이 무참히 짓밟힌 인권유린의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무렵이다. 매맞는 여성을 위한 핫라인(한국여성의전화)이 생기면서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억압을 당하던 여성들이 하나둘씩 자신이 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낱알이 고백하기 시작하였다. 갖은 폭언과 욕설, 뽀한 대에서부터 식칼과 몽둥이가 난무하는 폭력 현장까지 그 형태의 다양함, 폭력의 지속성과 높은 강도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유교적 전통이 깊게 남아 있는 가부장제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은 기존의 사회 질서와 통념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 가정은 가정의 통치 영역이라는 가부장제 전통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제3자 간섭은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오랫동안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역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만들었다.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고양되면서, 보육·고용평등·성폭력 관련 법들이 속속 제정되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개인 여성의 문제라고 여겼던 가정폭력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1995년부터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태동되었고, 1996년은 바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법제정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14개 단체들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제주연대'를 결성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였고, 약 1만 2천 여명 제주도민들이 서명에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마침내 1997년 11기 정기국회에서 국회여성특위가 마련한 가정폭력방지법 단일안이 통과되었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내용

1) 법제정의 의의

가정폭력방지법은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다. 이 두 법을 묶어 가정폭력 방지법이라고 통칭한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커다란 의의가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우선 가정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넓혔다. 둘째, 가정폭력은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게 된 것은 가정폭력이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공권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2) 내 용

가정폭력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 이혼상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자주 듣는 말이 가정상담이 가정을 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 말 속에는 가정이라는 것은 항상 사랑이 넘치고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꼭 지켜야 한다는 신화가 깔려 있다. 이런 신화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폭력가정은 이미 깨진 가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 유기, 명예훼손과 심한 욕설 등의 행위가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폭력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구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가정폭력사건을 고소할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고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하면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접수하면 검사는 이 것을 가정보호사건으로 할 것인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그 다음 과정에서 판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보호처분은 접근 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감호 시설 위탁, 치료 위탁, 상담 위탁 중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한다. 이 보호처분은 형사적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는다.

한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규정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여 가정폭력이 국가와 사회 문제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와 홍보, 가정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및 가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와 담당 공무원의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실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7월 한달 동안 제주도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처리된 사건은 세건 이다. 가정폭력 고소 사례가 10여건(1998년 7월 27일자 제민일보)이고, 3명이 구속되었고 3명은 입건 조사중이라고 한다(1998년 8월 2일자 제주일보). 그 동안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달 10건은 많다고 경찰 관계자와 신문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98년 7월 한달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은 여성상담소에서는 전체 72건 중 30건(41.7%), 제주여성 1366에서는 전체 97건의 상담 중 34건(35.1%)으로 총 64건에 달한다. 그러므로 신문에 보도된 것은 가정폭력 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나 적은 수치이다. 문제는 위 구속사례와

입건사례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데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주된 관심은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과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있는데,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은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가정폭력사건처리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서 23건이 불만사례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은 모두 경찰의 미온적 반응과 더불어 종전과 같이 '가정 일이니 개입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직무 유기하고 있으며, 그나마 강력한 수준의 조치라는 것이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에 대한 훈방 조치라고 한다. 여성상담소의 지난 한달 동안 상담에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했지만 경찰이 오지 않았거나, 왔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든가, 고소한 것을 취하하도록 은근히 종용하는 등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앞으로의 과제

법은 만들어지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강력한 유교적 가부장제 전통이 살아 있는 곳에서 여성에 관련한 법은 더욱 시행을 잘 해야 한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이 제대로 시행, 적용되기 위해서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당사자나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버지를 고소했을 경우 가장 먼저 얻는 것은 조용함과 안정이 아니라 주의의 비난이다. '얼마나 독했으면 남편을 고소했는가?',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가?' 등등의 비난과 고소 취하의 종용에 당사자들은 갈등하게 된다. 가장 큰 아무리 악해도 가장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가부장제 신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남편을 고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이 법에 의한 고소절차와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

른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 지 등등에 대한 교육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 의하면 국가가 이런 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관련 공무원, 특히 경찰관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와 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경찰들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공문서로만 전달받아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 법안의 내용과 경찰 등 관계자들의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 가정폭력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자의 이해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경찰청이나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화로 다시 확인한 다든지, 직접 신고하러든지 등등 가정폭력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지 않다. 형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방지법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세 번째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마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포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감은 피해자의 행동 하나 하나를 규제한다. 때문에 이들이 가출이나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종종 이런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가해자들은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쉼터는 가해 남편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발을 위한 상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머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10대 미만의 자녀로 인해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폭력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10대 자녀들도 동반 입소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활과 함께 해 온 여학위

경상대학 여학생위원장 **한강 방 울**
(경영학과 97)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3학기 동안의 나의 대학생활에서, '여학생위원회'라는 이름을 빼 놓는다면 할 얘기가 없을 듯하다. 대부분의 공감시간을 여학위에서 보냈고, 일주일에 3번 이루어진 모임을 통해 내 생활의 대부분을 여학위와 관련시켜 왔다.

1학년-새내기라는 이름으로 사정없이(?) 무모했던-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자보를 쓰고, 교육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활동에 대한 부담감 없이 모든 활동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막상 2학년이 되어 내가 위원장 자리에 오르고 보니 그 사정없던 무모함도, 절대 느끼지 못했던 부담감도 한없이 크게 나에게 닥친 현실이 되었다.

교육하나에도 자신이 없고, 새내기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이... 스스로 참 힘이 든 시간이었다.

흔히들 '여학생위원회'라는 이름을 낯설어 하고 때론 별 것 아닌 것으로, 때론 너무 무거운 것으로 인식하곤 한다. 처음 내가 그 이름을 대했을 때도 그러했다.

물론 그 특성상 무거울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남학생위원회가 아닌 여학생위원회가 생긴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적 문제와 흔히 '여자'라는 이름에 가해지는 크고 작은 폭력들의 문제가 크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문

제를 제기하고 풀고자 한다면,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리라.

또 동아리와는 다른 이유로 하나의 공통점(음악, 춤, 영어공부...)이 없이 모인 사람들이 특정 사업 없이 진행되는 터라 낯설고 작아 보일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상반되는 점들이 나로 하여금 여학위의 시간을 지치고 견디기 힘든 모습으로 남겨 놓았을 것이다.

오랫동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민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학위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문득 비디오 상영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 여성문제제치는 그 주제에 여성이 깔려 있다고 느껴지는 영화 2편을 정해 휴게실에서 상영한 적이 있다. 오다가다 감상하는 이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그저 영화만 감상했는지 모르겠다. 무거운 주제를 좀 더 친숙한 형태로 대중에게 접근하는 것-물론 영화 감상자의 대다수는 주제와 상관없는 그저 감상만이 목적이었겠으나-이 중요한 것 같다. 여학위내에서도 밖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런 방식이 절실한 때이다.

남은 1학기, 그리고 나를 이어 여학위를 만들 앞으로의 위원장. 그리고 여학위원들은 그런 노력에 힘을 아끼지 않으리라.

나의 남은 대학생활도 여학위와 함께 하게 될 것 같다. ♪



새내기로서 여연소 활동을 하면서

여성연구소모임원 박조지선
(원예생명과학부 98)

1998년 3월 2일은 제주대학교 입학식이자, 나의 대학 입학식이다. 자유로운 옷차림과 마음으로 시작된 나의 대학생활은 시작됐다. 수업시간도 강의 시간으로 불려지고, 선생님도 교수님으로, 98학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느라 꽤나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과선배와 같이 여성연구소모임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여기가 뭐하는 곳이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곳의 책임자인 소장님과 대화 속에서 내가 어렴풋이나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의 의문들을 “여기에서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98학번으로서는 내가 처음으로 여연소원이 되어 기뻐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즉, 여성들의 자아, 여성암, 여성의 질병에서부터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여성인데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또한 알리고 싶었다.

제일 먼저 여성암이라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나도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 봐야지”하는 생각도 하고, “병원비도 별로 안 비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암이라고 해서 검사도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피검사보다도

간단한 검사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조사, 준비하면서 “알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즐겁게 준비했다. 성폭행을 주제로 한 영화 ‘피고인’을 상영 준비하면서, 두 세 번씩 영화를 다시 돌려보고, 서너 번은 다시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비디오를 상영하는 “당일 많이 올까?”, “알고 찾아올까?”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와 주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했었던, 영화 상영이 끝난 후 관람한 학우들과의 토론 기회는 없어서 섭섭했고, “우리가 준비를 미흡하게 했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덜어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록 얘기할 기회도, “어떻게 보셨습니까?”하는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지만, 현수막을 보고, 게시판을 한번만이라도 봤거나 찾아 왔던 사람들만이라도 “성폭행”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앞으로 2학기에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와 사실을 알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내가 생각하는 여성학

여성연구소모임원 **최고 진 영**
(생물학과 98)

'여성학'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창하다"는 식의 느낌을 받고 있는 듯 하다. 남자에 대한 저항, 경계, 혐오적인 이론으로 똥똥 뭉쳐진 학문으로 생각하거나, '여성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무의식적인 저항감을 가진 여성들도 많다. 그러나 여성학은 어렵거나 거창한 학문이 아니다.

말 그대로 여성학이란 여성의 모든 문제를 알아보고, 연구해 보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실천적인 학문인 것이다. 생각해 보자. 생활을 하는 중에,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작게는 가족끼리의 생활 중에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놓치고, 불편함을 느끼며 나아가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를. 이러한 작은 느낌과 생각이 바로 여성학에 대한 입문이라 하겠다.

나의 여성학에 대한 입문은 나의 비(非)여성스러움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나는 그 누군가 말해주긴 전 까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었던 것이다. 남들보다는 약간 다른, 약간의 특수성을 띤 것 같다는 희미한 자각밖에 못했었다. 나에게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몇 명의 사람들, 나의 특이한 성격에 "여성스럽지 못한..."이란 정의를 내려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나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왜 사회는 여성들에게 여성스럽기를 그토록 강요하는가?"

"왜 여성들은 자신의 비(非)여성스러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여성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많은 남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았지만, 확실한 대답을 해 주는 이는 없었다.(그저 암전히 앉아 있고 꾸미며, 집안일과 양육을 여성의 본분으로 아는 것을 '여성스럽다'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초기의 나의 여성관은 남성들에 대한 경계와 불신으로 이루어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성친구를 사귀어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서 종전의 여성관은 무너지고 말았다. 단순히 남성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바른 여성관, 여성학이 설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으나, 그런 나의 시도는 꽤나 충격적인 깨달음을 안겨 주었다.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성적 불평등에 대하여 깊이(아니면 약간의 이상함이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많은 여성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만 그칠 뿐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거나,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전에 아버지와 진정한 남녀 평등(나만의 생각이었던가?)에 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남녀 불평등의 설명을 생물학적인 이론으로 전개하여,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으로 이야기를 끝내셨다. 그 양에 있어서나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 살아오신 날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이상, 그 분을 설득시키기란 어렵다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지금 사회의 기득권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살기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다.(인정만 하셨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분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었고(힘의 차이라든지 체격의 차이), 다른 하나는 이 사회의 진정한 남녀 평등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남녀 평등한 사회"가 지금 사회에 대한 엄청난 반항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씁쓸한 생각과 아울러서 말이다.

진정한 남녀 평등, 그것은 무엇일까?

각각의 성(性)에 합당한 불평등의 평등 원칙을 기본으로 모든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며, 성(性)에 따른 교육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를 짓지 않는 것, 특수한 성(性)의 우월성이나 열등성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남성, 여성이 서로의 성을 존중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 느끼고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성은 알아야 한다고 본다. 보다 많이 배우려 노력하고 많이 느껴야 한다.

그리고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의 열등함을 규정지어 버리지 말자.(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건만 왜 "성평등"을 외치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

어떤 학자는 '여성학'이란 학문이 없어지고, '인간학'이란 학문만이 존재하게 될 때 남녀 평등이 이뤄진 때라 하였고, 또 다른 학자는 '여성학'이란 "남성, 여성 모두의 성적 평등을 추구하므로 '인간학'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등하며 살기 좋은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 남성 모두 깨어 있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특히 나는 여성들에게 자신만의 여성관과 주체성을 가지라 말하고 싶다. 내가 나의 주인임을 알아야만 나의 권리를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입장에 대해 주체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연구소모임에서는 ● ● ● ● 참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 참여회원이 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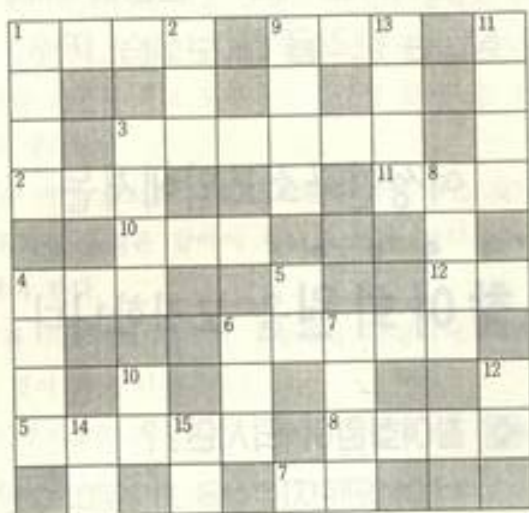
1. 여성관련자료실을 자유로이 이용.
2. 여연소에서 만드는 학습자료 이용.
3. 여연소가 주최하는 학습에 참여 가능.

☞ 위치 : 총여학생회 옆 학생회관 3층 303호

☞ 전화 : ☎ 754-2370



☀ 낱말 퍼즐 ☀



♣ 가로열쇠

1. 98년 총여학생회 슬로건. 11대 ○○○○ 총여학생회.
2. 사람 또는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어미 얻은 법률상의 권리.
3.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
4. 어떤 사람의 병을 주장하여 치료하는 의사.
5. 군사에 사용되는 각종 비행기.
6. 총여학생회 회장단과 각 단위 여학생 조직 책임자로 구성됨.
7. 대상을 인식·사용하는 주체나 의식. ↔ 객관.
8. 친분이 가깝지 못한 사람은 서로 가까운 사람을 여간하지 못한다는 말.
9. 어떤 축제일에 앞서, 그 전날 밤에 행하는 축제 행사.
10. 어떤 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
11. 식물체 고유의 성질.
12. 성질이 강하고 굳음.

♣ 세로열쇠

1. 재상이 될 만한 인재.
2.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을 마음에 받아 들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3. 법률상·정치상·사회상에 있어서 여자에게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주의.
4. 한반도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일까요?
해마다 이것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죠. 올해엔 대표적으로 허주연씨 사건이 있었죠.
5. 마음먹은 중심
6. 음성을 크게 하여 멀리 들리게 하는 장치.
7. 모든 일이 운수에 달려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말.
8. 직접 물권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 행위.
9. 2천만 여성 민중의 등대지기. 올해엔 경북대 총여학생회장님께서 의장으로 선출되었죠.
10. 힘써 지켜 막음.
11. 3월 8일은 ○○○○의 날.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외쳤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12. 성이 같은 가까운 일가붙어. 흔히 팔촌 이내의 친척.
13.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원시 종교 의식.
14. 액체 속에 녹아 있는 물질.
15. 몸을 움직임. 또는 그 동작.

낱말 퍼즐을 풀어 오시는 분께는 9월 17일~9월 26일 동안 매일 5명씩 뽑아, 도서상품권 1매 혹은 총여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여성학 도서 1권을 선택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 방법 : 퍼즐 복사 본을 갖고 총여학생회사무실로 직접 방문
 - 당첨자 발표 : 개별 통보
- 하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성의 • 자부심으로 • 우뚝 • 선 6회 여성 문학상 공모

- ☎ 모집부문 : 시 (3편 이상)
단편소설(원고지 100매 내외)
수필(30매 내외)
- ☎ 시상내역 대상 : 30만원
佳作 : (부문별) 10만원
- ☎ 응모요령 : 걸봉에 '여성 문학상 공모작'이라고 기재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연락처 첨부
- ☎ 보낼 곳 : 제주시 아라 1동 산1번지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 690-756, T. 754-2364)
- ☎ 공모대상 : 만 20세 이상 도내 거주자
- ☎ 마 감 : 98년 10월 31일
- ☎ 발 표 : 추후 개별 통보
※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민 족 제 주 대 학 교
14대 공존예감 총여학생회

아라여성 스물아홉번째

펴낸이 ☎ 양오진숙(회계 96)
발행일 ☎ 1998년 9월
펴낸곳 ☎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제주시 아라1동 산1번지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 690-756 ☎ 754-2364